

<p>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간단히趣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이條例는 1993年 11月 13日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를一部改正한 바 있습니다. 同條例改正時에 市議員님 여러분께서名譽市民證授與對象者選定을公正히 하고慎重히 하기 위해서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를設置해서運營해야 할必要가 있다는意見を提示했습니다. 그에 따라서市議員님과서울市公務員으로 구성된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를두는名譽市民證授與條例施行規則을制定을해서그案을委員님 여러분께 한번 봐어드린 바가 있습니다.</p> <p>同規則을制定公布하기 위해서法律的適用內容을檢討하던中서울市法律顧問으로부터市政諮問과審査를 위한委員會構成은地方自治法과同法施行令第42條에 따라서條例에根據가 있어야設置할 수 있다는意見이 계셨습니다. 따라서名譽市民證授與條例에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設置根據를 마련하고 그에根據해서同施行規則을制定公布하고자 합니다.</p> <p>提案事由를 다시 간단히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對象者를選定함에 있어서公正과慎重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를構成,運營하고자 합니다.</p> <p>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에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를 두고 그構成과運營에關한事項은規則으로定한다, 이렇게規定하고자 합니다.</p> <p>以上 간단히 提案說明을 올렸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1. 제안경위</p> <p>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17일 서울특별</p>	<p>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p> <p>3. 주요골자</p> <p>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p> <p>4. 근거</p> <p>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p> <p>5. 검토의견</p> <p>가.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조례는 우방국가 국민으로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li> <li>•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을 10인이내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li> </ul> <p>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조례의 근거없이 규칙으로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필요적 규정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여 짐.</li> </ul>
--	---

<p>다. 대 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자문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어야 자치법의 위계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p>라.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것을 의무화한 필요적 사항임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법령의 형식과 위계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p>.....</p> <p>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質疑答辯은 案件의 性質上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안 계시면 質疑答辯을 마치고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명예시민증</p>	<p>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 李喆鎬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p> <p>○金寅東委員 한 가지만 質問하면 안 될까요?</p> <p>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會議 때 報告를 해 주셔야 되었는데, 우리가 동양극장을 당초에 서울시가 買入을 해서, 우리 나라 劇場의 嚆矢이고 또 그런 劇場文化의 産室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그 동안 市 當局이 所有主人 現代建設과 交渉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당초에 이것을 引受할 計劃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進行 中에 어느 날 갑자기 現代側에서 동양극장을 買入을 해서 買入을 해서 그 때에 現代建設側으로부터 內諾를 받기를, 앞으로 짓는데 그 建物 內에 文化施設을 반드시 넣겠다, 말하자면 劇場施設을 포함한 文化施設을 거기다 반드시 넣겠다고 한 事實이 있습니다.</p> <p>그래서 다음 會議 때 내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었는데 그래서 그 財閥의 放恣하고 무모한 그런 行爲에 대해서 그 때 온 言論界가 들끓고, 온 良識 있는 文化人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問題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建物이 한참 建設 中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維持되고 있고 서울시가 그 問題에 대해서 確</p>
--	--